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 목 차

I. 총 칙 .....	1
<input type="checkbox"/> 과업의 명칭	
<input type="checkbox"/> 과업의 목적	
<input type="checkbox"/> 과업의 개요	
<input type="checkbox"/> 과업의 내용	
<input type="checkbox"/> 일반사항	
<input type="checkbox"/> 발주처와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	
II. 일반지침 .....	10
<input type="checkbox"/> 기본방향	
<input type="checkbox"/> 일반조건	
<input type="checkbox"/> 적용기준	
III. 세부지침 .....	14
<input type="checkbox"/> 일반사항	
<input type="checkbox"/> 부문별 세부지침	
IV.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29
<input type="checkbox"/> 일반사항	
<input type="checkbox"/> 유의사항	
<input type="checkbox"/> 성과품 작성	
<input type="checkbox"/> 성과품 납품	
V. 첨부서식 .....	38

## 제 1 장 총 칙

### 1. 과업의 명칭

과업의 명칭은 『광주소방서 송정119안전센터 신축공사』라 한다.

### 2. 과업의 목적

119안전센터 기능을 고려한 현대적 감각과 공간이용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청사 각 실의 기능에 따른 효율적 배치로 쾌적한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소방방재 목적의 효과적 수행에 기여하고자 함.

### 3.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221번지 일원

나. 사업규모

- 1) 대지면적 : 2,000㎡
- 2) 건물규모 : 연면적 약 1,000㎡ 미만, 1개동, 2층
- 3) 수용시설

가) 규 모 : 지상2층

나) 공간구성(설계공모지침서 참조)

※ 안전센터 동 외벽을 활용한 소방공무원 훈련시설 설치(협의)  
(완강기, 로프하강, 수직사다리, 암벽등반 등)

※ 소방차 세차시설 (폐수처리시설)-협의

다. 추정공사금액 : 금4,455,000,000원(부가세 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설계,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인입비(전기, 수도, 가스 등)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제시된 추정공사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 과업 수행기간

- 1)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한다. (공휴일 포함)

※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심의 등 설계 관련 심의일정은 용역기간에 미포함.

## 4. 과업의 내용

가. 본 과업지시서는 『광주소방서 송정119안전센터 신축공사』에 적용한다.

나. 과업의 범위

- 1) 기본 및 실시설계
- 2)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포함
- 3) 설계상 필요한 조사, 검사, 진단, 시험 및 현황 파악 등을 위한 업무
- 4) 설계 등을 위한 인·허가 관련심의, 협의 등의 제반 업무수행  
※ 경기도 소방건축물 표준설계 가이드라인 적용
- 5) 사후설계관리업무  
※ 사후설계관리업무 : 설계완료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을 수행하는 설계업무를 말하며, 「건축법」 제72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
- 6) 설계의도의 구현을 위하여 발주처의 요청 시 시공자·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안 업무에 참여하여야 하며, 비용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7) 작성설계도서  
가) 본 설계의 범위는 건축공사, 토목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설비공사, 조경공사, 소방설비공사, 기타부대 시설공사  
나) 건물배치 및 계획과 동선조정 등으로 인한 토공사 및 옹벽설치공사  
다) 기타 본 사업을 위하여 외곽간선에서 인입이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정보·통신설비 등의 연결공사  
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에 필요한 도면
- 8) 송정119안전센터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계획 작성  
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내역서 작성  
나) 신축공사 기간 산정 및 건설사업감리원 투입계획표 작성  
다)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등

## 5. 일반사항

가. 발주기관 및 연락처

- 1) 발주처 : 경기도(경기도소방재난본부)
- 2)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3) 연락처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건축팀 031)230-1948

나. 착수신고서 및 기타서류 제출

- 1) 수급인은 용역착수 시에 다음의 제반서류(이하 “착수계”라 한다.)를 각 2부씩 제출한다.

- 가) 착수계
- 나) 기술용역공정예정표
- 다)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라) 분야별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 마)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 바) 건설기술인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첨부
- 사) 분야별 하도급승인 요청서(하도급 승인요청은 착수 후 4주 이내 제출 )
- 아)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협정서 등
- 자)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연락처 기재)
- 차) 낙찰(계약)금액에 의한 산출내역서
- 카)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수급인은 기술용역공정예정표상의 완료일 이전에 다음서류를 제출한다.

- 가) 기본·실시설계 검사원, 지반조사보고서, 각종 측량성과표
- 나) 건축법 및 과업지시서 등 제반법규 검토서
- 다) 건축협의(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서류
- 라) 각종 심의에 필요한 서류 등

다.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 1) 수급인은 착수계 제출 후 3일 이내에 착수계 내용, 책임기술자의 적합성, 하도급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협의한다.

- 2)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업무협의를 하고 협의결과 보고서를 작성 보고 한다.

- 가)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 나) 기획업무, 계획설계 완료 시
- 다) 공법 및 각종 시스템 결정 시, 주요자재 선정 시
- 라) 기본, 실시설계 검사원 제출 전·후
- 마) 기타 발주처가 필요 시

- 3) 수급인은 다음과 같이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정보고서 (용역수행 대표자명의를) 작성하고,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가) 본 설계안 및 추진계획 보고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나) 수시보고 : 발주처의 요청 시 수급인은 설계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자료제출 포함)
- 다) 최종보고 : 납품 10일전에 최종도면 및 내역서는 감독관의 검토를 받은 후 보고(검토 날인이 없는 것은 인정치 않음)

- 4) 업무협의 발의자는 개최일 3일 전, 모든 참석자에게 시간, 장소, 참석범위, 안건,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라. 사용자재

- 1) 본 설계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 KS제품과 고효율(에너지절약, 절수) 인증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소방산업기술원에서 검증·인증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기타 자재는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한 규격품을 선정하며, 외국산 자재의 사용은 최소화(국산제품의 수급이 어려울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 3)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마. 관련기관 인·허가 협조

- 1)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협의·허가 및 발주기관의 심사결과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 2) 수급인은 과업수행 전 부지 내·외 지하지장물의 매설여부(도시가스관, 상·하수도관, 기타) 및 전력공급 가능여부, 상수도 공급가능여부, 도시가스의 공급가능여부 등을 수급인의 책임 하에 관련기관(부서)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하도급의 범위

수급인은 도급 받은 설계용역 전체를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도급 시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6조(하도급승인)에 따라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수급인은 하도급 된 당해업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사. 각종 조사 및 자료수집

1) 현지답사

- 가) 수급인은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현지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 나) 또한 지형, 지질,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측량조사(계약이후 협의에 의함)

- 가) 측량은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장물 조사

- 가) 계획구간내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을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 하도록 한다.
- 나)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도관, 가로수, 간판등)은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 또는 대체시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다)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상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지반 및 지질조사(계약이후 협의에 의함)

- 가)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조사하며,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질 및 암석시험규정,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나) 지반 및 지질조사 시 표시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조사개요
  - (2) 조사 위치도
  - (3) 조사계획표(조사, 시험, 보고서)
  - (4) 조사 조직표
  - (5) 주요장비 및 기기
  - (6) 특기사항
  - (7) 기 타
- 다) 수급인은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처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라) 건축물의 주요기둥이 설치되는 구간에 실시하며, 4개 이상의 NX 보링을 하도록 한다.

- 마)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한 경우 계약 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 바)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획지역의 지질도, 지형도 등과 기 시행된 기존 조사자료들을 수집하여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사의 성과분석에 참고한다.

- 사) 시추 및 현장시험 관경은 공법과 시험 종목을 표시한 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시험에 따른 모든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한다.

- 아) 부지측량과 지반조사 결과를 필히 확인하고 지하공간 계획, 건물 배치 등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구조물조사

- 계획대지 부근의 기존 건물을 비롯한 각종 구조물 현황 등을 조사한다.

6) 용지조사

- 가) 본 과업에 따른 각종법규 및 인·허가사항을 조사하여 기재한다.
- 나) 계획구간 내의 도시계획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조사하여 검토한다.
- 다) 민원 발생 예정 지역 및 협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다.

7) 기타조사

- 가) 기 조사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된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 나) 기 조사된 자료가 있으나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추가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 필요한 조사내용을 기재한다.
- 다) 각 조사항목별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을 작성한다.
- 라) 본 건축물이 주변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 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 마) 수급자는 설계 착수 전에 최근 개소한 119안전센터를 현장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 참조하여야 한다.

아. 기타

- 1)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의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상호 협의하되,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회계 법규에 따른다.

- 가) 본 용역성과 최종안을 작성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완성한다.
- 나) 본 과업의 완료는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계약심사 결과에 따른 과업수정에 결과에 대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과업이 종료된다.
- 2) 과업 기간 중에도 발주처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 및 보완 사항 발생 시 이를 보완 하여야 한다.
- 3) 본 과업수행 중 책임기술자 및 각 분야의 기술자 교체 시는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수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수행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안전교육을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 6. 발주처와 수급인의 책임 및 의무

### 가. 설계의 목표와 추진절차

-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2) 수급인은 합리적인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착수 시 계약에 의거 발주처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요구조건들을 판단하고 결정하여 설계요구조건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수급인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 4) 수급인은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 5)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처와 협의된 기본설계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처에 보고할 책임이 있고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처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6) 수급인은 언제든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해 즉시 발주처에 보고한다.
- 7) 수급인은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현 상황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 8) 수급인은 계약 체결 시와 설계용역 착수 시 그리고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제출할 때는 반드시 대지를 확인하여 계약 및 설계도서와 다른 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대지의 조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처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9) 수급인은 설계 추진과정에서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등 각 공종별로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세부 설계내용에 상이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10) 수급인은 용역 종료 후 공사 진행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또는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 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처가 이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구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에 따르는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11)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은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공정계획

- 1) 수급인은 설계용역의 공정에 대하여 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거나 발주처가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을 제안한다.
- 2) 공정은 모든 일정이 작성되어야 하고 수급인은 발주처가 동의한 공정계획에 의한 업무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 3) 공정계획은 용역착수 시 뿐만 아니라 용역수행과정에서도 항상 재검토 되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다. 보안

- 1) 업무내용의 비공개

수급인은 발주처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2) 성과품은 발주처에 최초 제출

수급인이 작성한 발주처와 관련한 모든 성과품은 이를 공개, 공모 또는 다른 행위를 하기에 앞서 발주처에 최초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검토 및 승인창구 단일화와 절차 체계화

수급인과 발주처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창구는 단일화되어야 하고, 절차가 일정한 양식을 통하여 체계화되어 보안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서와의 관계

1) 발주처와 수급인은 계약내용의 이행에 상호책임을 진다.

2) 발주처의 승인으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가) 발주처는 설계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수급인은 발주처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을 위반할 수 없다.

나) 과업내용의 변경은 발주처와 수급인이 문서화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변경의 근거서류가 된다.

다) 계약서 및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며, 이때 업무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때는 “2” 항에 따른다.

마. 공사비와 예산

1) 수급인은 용역수행 시 추정공사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정 공사비의 산출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2) 특히 환경친화적 설계에 따른 추가공사비용에 대하여는 과업 착수 단계부터 소요예산의 증감사항 및 적절성에 발주처와 수시로 협의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3) 개산견적과 별도로 상세견적은 계약서에 의한다. 수급인은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발생비용, 기존시설의 일시 이동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4) 신축위치에 있는 모든 토목공사(옹벽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바. 과업 변경

1) 본 과업수행 상 정부의 상위계획 변경 또는 발주처 사정으로 인하여 과

업시행 범위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 방침에 따라야 한다.

2)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나,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결정금액에 하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의 감액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 금액을 당초 금액에서 감액 환산 조치함에 동의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과업 준공이후라도 변동사항이나 보완사항이 있어 관련서류(도서)와 현장 확인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 2 장 일반지침

### 1. 기본방향

가. 건축물 외부 디자인

1) 기존의 권위적이고, 획일적인 소방청사의 이미지를 탈피한 친근한 소방청사의 이미지 부여

2) 주변 환경과 조화성 있는 외부디자인, 경기도 및 광주시 경관디자인 반영

3) 경기도 소방건축물 표준설계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디자인

나. 직원복지 기능을 고려한 건축계획

다. 미래 소방청사 방향에 대비한 공간구조

1) 사용자수의 변동에 따른 가변적 공간구조 설계

2) 소방수요 증대에 따른 증축가능 배치

라. 소방청사 사용자에게 대한 안전성 고려 설계

1) 건축물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고려

2) 소방차의 진출입시 안전 확보 가능성 부여

마. 건축 연면적은 제시한 면적(999㎡)에서 조정가능 함.

- 단, 건축물 용도, 인력·장비 수용, 각 실별 기능 등을 만족하여야 하며, 조정 연면적이 1,000㎡ 미만으로 설계를 진행해야 한다.

### 2. 일반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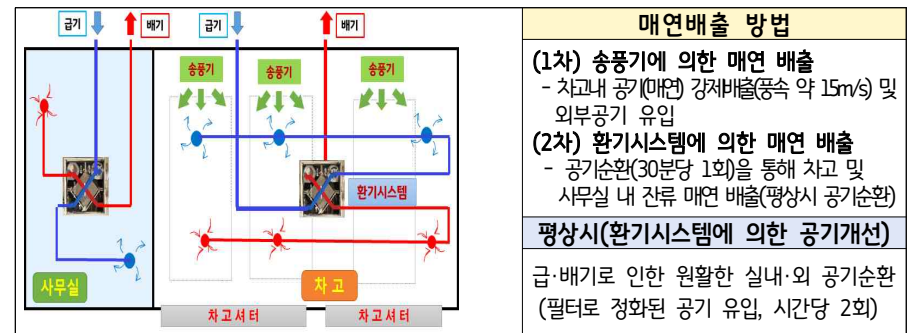
가. 화재출동 시 일반조건

- 1) 화재·구조·구급출동 시 신속한 차고탈출 및 동절기 노면 동결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차고 경사도가 되도록 설계할 것
- 2) 차고는 소방차량이 출동대기, 정비공간이 충분히 확보 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 ※ 소방차량 제원(전장 \* 전폭 \* 전고) - 각 제작사별 제원이 다소 상이함.
- 3) 차고 내 급수용 배관설치 및 지상식소화전을 사용가능토록 설계할 것
  - ※ 청사내 상수도와 소방용수배관 별도 설계(유지관리비용 차이)
- 4) 겨울철 기온 급강하에 따른 고가 정밀장비 및 물을 취급하는 소방장비의 동결, 동파 가능성 있으므로 건물전체 보온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 5) 차고문은 자동 및 수동으로 신속히 개폐 가능토록 설계할 것
- 6) 차고문 개폐장치는 차고, 사무실에서 제어(개폐)가 가능토록 설계할 것
- 7) 수관(호스) 건조대는 차고 내·외 적정위치에 자동식으로 설치한다.
- 8) 통신 및 화재출동방송 등 ⇒ 발주처 및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규격에 맞게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하며 자체방송보다 화재출동방송이 우선하여 방송되도록 설계할 것.
- 9) 계단은 야간출동에도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 및 경사도를 확보 하여야 하며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하여야한다
- 10) 차고 바닥면 급배수가 가능토록 배수로를 설치하고 배수가 용이하도록 경사도 유지 (배수구는 2군데 이상 확보할 것)
- 11) 기타 화재출동에 관련된 시설은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한 용역감독자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나. 직원근무환경 조건

- 1) 화재진압대원 귀소 후 물에 젖고 연기, 그을음 등에 오염된 복장, 장구 등의 세척 및 대원 공동샤워시설 설계할 것.
- 2) 소방차고는 소방차량의 배기가스가 배출될 수 있고 배기가스가 상층부의 창문 등을 통하여 실내로 유입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 할 것.
  - ※ 차고구역과 사무실 구역이 방풍문 등 2중으로 구획
- 3) 진압대원 대기실내 세면기 및 샤워부스 설치하고 대기실의 개인 옷장은 불박이장을 설치하고, 세부기준은 설계 시 협의하여 결정한다.
- 4) 여자구급대원 대기실 내 세부기준은 설계 시 협의하여 결정한다.
- 5) 모든 대기실의 사물함은 불박이장으로 설치 할 것

- 6) 내부휴게실은 직원이 화합 및 문화공간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설계하고, 외부 휴게공간은 근무자들의 휴식과 민원인 등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설계 할 것.
- 7) 2층 복도는 충분한 채광이 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할 것
- 8) 24시간 근무여건에 맞는 식당을 설계하고 취사는 가스 사용 용량 및 배관 등은 규격에 맞게 설치하고 다용도실 공간을 확보할 것
- 9) 다목적훈련장은 체력단련실 및 교육훈련이 가능한 공간으로 설계하며, 바닥은 나무로 하되 부상 방지와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하여야 함
- 10) 기타 직원근무환경에 관련된 시설은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정에 적합 하지 아니하는 한 용역감독자의 의견을 따라야 함
- 11) 건축물 외부 벽면 등을 활용하여 현장활동 표준기법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옥외훈련장을 설치(협의)
- 12) 소방차 세차관련 폐수처리시설을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한다.(협의)
- 13) 호흡보호장비정비실은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소방방재청고시 제2013-8호)를 참조하여 적절한 공간으로 각종 장비들을 비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14) 구급소독실 : 소방청 119감염관리실 표준규격서 설치기준에 맞게 담당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한다.
- 15) 청사 차고내 매연배출설비는 혼합배출방식으로 설계한다.



3. 적용기준

가. 본 과업지시서는 「송정119안전센터 신축공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

구조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설계자는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기준 이상의 성능 및 재질과 공법을 적용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한 소요시설 외에 품질과 기능이 향상되는 시설은 설계자가 판단하여 설계에 반영 할 수 있다.

- 나. 과업지시서 등의 자료는 발주처에서 설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설계자는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해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사전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자의 부담으로 한다)
- 다. 설계자(수급인)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 등에 따른 책임 (민·형사상)은 수급인(설계용역자)이 진다.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라. 특수자재, 공법의 적용으로 부득이 본 설계지침에 명시한 대로 설계할 수 없는 경우 설계 설명서(기본설계)에 그 적용부위, 자재, 공법의 명칭과 공인 기관의 기술검토서 및 시험데이터 등 적용부위에 적합한 자재, 공법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성능관련 입증 자료를 명시하여야 하며, 시방서(실시설계도서)에 그 품질규격 및 시공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때 입증하여야 할 성능 명목은 KSF 1010(건축물에 영향을 주는 각 요인의 성능분류)에 따른다.
- 마. 본 시설은 기본목적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아울러 설계는 공사의 능률성과 경제성이 제고 될 수 있는 기법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특히 시공에 있어서는 신공법 및 기술개발 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법으로 하고 준공 후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 바. 본 시설의 설계기준은 관계법규·규정·지침·고시·조례·KS규격 및 국토해양부 등 정부기관에서 제정한 관련 표준시방서와 관련 설계기준, 본 도서작성지침 및 설계지침이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하며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이상으로 한다. 납품일 이전에 관계법규 등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 사. 본 과업지시서에 본 시설의 기본적 기능 및 관리상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경우에는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아.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 또한 수정을 요할 경우, 이에 부수되는 모든 사항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자. 토목, 건축, 설비, 전기, 통신 및 조경 등 부대시설에 대한 설계기준은 관련 법규와 제반기준 및 설계지침서에 의한다.
- 차.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내역서 등은 조달청 계약발주가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 제 3 장 설계세부지침

#### 1. 일반사항

본 119안전센터 설계의 성격, 기능 등 제반조건을 분석하여 다음 몇 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설계의 전 과정에서 이러한 기본 이념이 발생되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 가. 토지이용계획

장래 발전가능성에 대처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그 전제로서 동선 및 수용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미래의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계획

##### 나. 동선계획

동선계획은 기능공간 배분에 설정된 시설공간을 체계적으로 연결 지어 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

##### 다. 시각적 형태

- 1) 건물의 층수 : 건물의 기능을 고려하며 주위환경과 스카이라인을 고려
- 2) 건물의 외형 : 자연과 조화될 수 있는 형태로 변화성을 추구
- 3) 건물의 층고 : 각 층의 용도에 따라 조정하며 구조에 따른 유효공간과 활동 내용에 따른 인체동작, 공간밀도에 따른 적정환경 및 경계성 고려

##### 라. 구조별 계획

###### 1) 사무실

- 가) 각 실과의 동선 및 이용의 관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위치 배치
- 나) 직원 업무 등에 대한 배려

###### 2) 소방차고

- 가)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정면적 및 기능유지
- 나)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등 특수장비의 적정면적 및 기능유지



- 다) 소방차량 용수 급수시설의 안전성, 효율성을 고려
  - 3) 휴게실 : 직원의 휴식, 담화 등의 기능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
  - 4) 화장실 샤워실 : 업무 특성상 동선이 짧고 사용상 불편함이 없는 곳에 배치 (장애인 화장실은 공용공간에 남녀공용으로 1개소로 별도 계획할 것)
  - 5) 구급소독실 :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정면적 및 기능유지
  - 6) 장비보관창고 : 장비보관 용이하도록 사용상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
  - 7) 호흡보호장비정비실 :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정면적 및 기능유지
  - 8) 대기실
    - 가) 각 실과의 동선, 소음 등을 고려하여 적정위치 고려
    - 나) 사물함 배치 등에 대한 고려
  - 9) 다목적훈련장 : 대원들이 체력훈련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및 교육훈련관련 부대시설
- 마. 기타 고려사항

- 1) 소방동선의 집중화 및 단순화
  - 가) 사무실, 다목적훈련장, 식당, 회의실 등 근무에 용이하도록 배치
  - 나) 소방차고, 대기실, 휴게실 및 정비공간을 집중화
  - 다) 소방동선을 단순화하여 비상시 출동동선 단축
- 2) 비상출동에 적합한 시설
  - 가) 유효한 유·무선 통신시설 확보
  - 나) 전면 소방차량 출입공간의 충분한 확보
  - 다) 대기실, 사무실 등은 차고 및 사무실과 최근접 방향 배치
  - 라) 2층 → 1층 방향은 안전한 계단 시설
  - 마) 1~2층 전 공간 방송설비 확보(실내/실외)
- 3) 소방장비의 관리유지측면 및 경제성 제고
  - 가) 에너지 절약형
    - (1) 자연채광 최대한 확보
    - (2) 차고 내 자연환기 극대화(열손실 최소화)
    - (3) 차고, 대기실 등은 기능, 구조에 맞도록 부분별 난방시설
    - (4) 외곽, 창문, 유류 및 전기시설 등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시설 및 자재 적용
    - (5) 충분한 정비 공간 확보

- (6) 부대시설 확보 : 정비부품 창고, 세탁 및 세차시설 등
- 4) 현대화된 미래지향적 시설
  - 가) 훈련 및 기타 평상시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공간 확보
  - 나) 조형의 현대화
    - (1) 미래지향적이며 경쾌하고 안정감 있는 구조
    - (2) 경직된 외관을 탈피한 봉사 관서로서 친근감 있는 조형추구
    - (3) 도시 발전에 따른 소방행정 수요 증가에 대비
    - (4) 장비 현대화 등에 따른 여유 있는 층고 및 증축 공간 확보
    - (5) 지역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내부구조의 가변성 확보
- 5) 유지보수 및 관리비용이 극소화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6) 기본계획(안)은 대안검토를 하여야 하며, 심의를 거쳐 확정 후 실시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 7) 발주처의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시에는 즉각 수정·보완 후 심의를 통과하여야 한다.

## 2. 부문별 설계지침

### 가. 건축 설계지침

- 1) 건축시설별 면적 및 계획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며, 제시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운영관리에 관한 설계자의 아이디어에 따라 통합, 또는 분리·강화 할 수 있다.
- 2) 동일 예산 조건에서 가장 경제적인 시설이 되도록 계획하고, 유지관리비가 저렴하도록 설계한다.
- 3) 부지의 높이차를 고려하여 계획하고, 지중벽 발생 시 결로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 4) 각 실은 건축계획 각론에 따라 설치하고, 발주청의 의견을 관계법규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한다.
  - 배치계획 및 동선계획
    - 소방청사 부지는 관할 구역의 재난수요 및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이뤄질 수 있는 곳으로, 가능한 평지, 상습 침수지역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하고 소방차량의 운행 시 안전사고, 소음으로 인한

피해 등을 지양하고, 직원 출퇴근 및 민원인 접근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대중교통시설이 인접한 곳에 선정

- 소방청사는 소방업무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보건·안전 및 보안을 고려하여 시설을 배치하되, 오염구역(RED ZONE)·경계구역(YELLOW ZONE)·안전구역(GREEN ZONE)으로 구분하여 배치한다. 다만, 현장출동·대응관련 시설과 사무실은 신속한 출동과 민원인 방문 편의를 위해 가급적 1층에 둔다.
- 소방차고와 사무실, 대기실은 실내온도 유지와 채광 및 에너지 효율성을 감안하여 일조시간과 일조량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가급적 남향을 기준으로 배치한다.
- 출동대기실은 소방대원의 신속한 출동과 휴식·사생활보호 및 보건·안전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남·여 대기실은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둔다.
- 감염관리실은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 등의 소독을 위해 구급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차고 인근에 배치한다. 이때, 감염관리실은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입구와 출구는 분리하고, 화재·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의 소독을 위한 공간과는 구분하여 배치한다.
- 심신안정실은 상담·치유·회복을 위한 각각의 구획된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하되, 현장대원의 접근 및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 장비보관실은 신속한 출동과 복귀 시 편의를 위해 가급적 1층 차고 내부 출동동선 상에 배치하되, 오염구역과 경계구역을 구분하여 관리한다.
- 출동 소방대원을 위한 샤워실, 세척실, 화장실 등은 오염된 피복과 장비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오염구역과 안전구역에 각각 배치한다.

#### ● 사무실

- 센터장실과 사무실로 구분하여 구획하고 센터장실에는 사무전용

공간과 응접세트 공간을 고려하여 계획, 사무실은 119안전센터 현관 출입구에 위치하며 현관 조망 확보 및 청사 내 모든 구역 방송(필요 시 부분방송)설비 시설을 설치한다.

- 청사 전체 시설의 화재감시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 남직원 대기실

- 수용인원 13인을 기준으로 1인실 1실 및 3~4인실로 야간 긴급출동을 고려하여 차고와 근접하여 배치한다.(매연 유입방지 철저)
- 1층 배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 대기실 내 33명(3팀 교대근무)의 개인사물함(W800\*D600\*H1880) 공간을 확보한다.
- 공동세탁실, 공동샤워장 및 공동세면장은 대기실내에 배치한다.
- 대기실내 TV, 인터넷·전화단자 등을 개인사물함 배치공간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 탈의실

- 대기실내 샤워실 전면에 탈의공간을 별도로 배치하는 것을 고려한다.

#### ● 여직원 대기실

- 여직원 프라이버시를 고려를 설계한다.
- 대기실은 3인 1실로 계획한다.
- 대기실 내 9명(3팀 교대근무)의 개인사물함(W800\*D600\*H1880) 공간을 계획한다.
- 대기실 내 화장실, 샤워실(세탁기 설치 공간) 별도 설치 및 TV, 인터넷·전화단자 등을 설치한다.

#### ● 소방차량 차고

- 소방차량 4대의 주차공간을 계획하고 긴급출동 시 출동대원의 공간 확보를 위한 기둥 중심간격은 9.0m 이상으로 계획한다.
- 차고바닥은 도로보다 높게, 차고의 층고는 6.0m 이상으로 계획한

다.

- 차고문은 오버헤드도어 셔터 stacking - Door(천장수직격납형)자동식으로 설치하고, 비상시 수동식 open 가능토록 설계한다.

(셔터는 차량 기준으로 전방과 후방에 설치)

- 차고문 개폐장치는 차고문과 사무실에서 각 구역별로 조작 가능하도록 하고 정전 시 비상발전기와 자동 연계되는 구조로 설계한다.

- 차고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사무실 및 대기실에 유입되지 않게 환기 및 차량배기가스 배출시스템을 설치한다.

- 현장직원 개인출동장비함 여유공간(별도공간 확보우선)을 확보 설계한다. (개인출동장비함 규격 W600\*D600\*H2200) \* 직원수

- 차고 내에는 배수설비(무소음트렌치) 및 소화용수 보급용 지상식 소화전을 설치한다. (트렌치 배수구는 두군데 이상확보)

- 차고바닥은 내구성이 강하고 보수가 용이한 방식(압축타일 등)으로 한다.

- 소방차량 등 현장업무에 필요한 기능조작 훈련을 위한 차고 앞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 ● 소방장비 창고

- 소방장비 창고(소방장비 소모성 물품·장비 보관, 화재진압장비 전용 창고, 구급장비 전용창고) 공간을 확보한다.

- 소방차량 차고와 근접 배치하여 장비 이동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 ● 호흡보호정비실

- 12㎡ 이상, 외기와 접하는 공간, 전원 380V 3상 확보한다

- 1층의 신선한 공기 유입이 가능한 장소에 배치한다.

(환기 : 급기(50ø 이상 급기구) / 배기(50ø 이상 기계식 FAN)

- 별도 공기호흡기 용기(공기통)보관 창고 및 방화복 전용세탁실(방화복 세탁기 규격 1100\*1450\*885)을 계획하고 별도의 출입구로 구획한다.

- 소방청 고시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참고

#### ● 감염관리실

- 구급차량의 접근이 용이한 1층에 배치 한다.

- 면적 30㎡ 이상, 급·배수시설 설치, 전원 380V 3상 확보한다.

- 별도 구급장비보관 창고를 계획하고 별도의 출입구로 구획한다.

-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 표준규격서」 참고

#### ● 심신안정실(PTSD치유실)

- 면적 30㎡ 이상으로 설치한다.

- 경량칸막이로 구획하고 색채, 조명, 인테리어 등은 밝고 아늑한 분위기 조성 등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한다.

※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사람이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 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질환,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 ● 체력단련장 및 다목적훈련장

- 각종 헬스기구 사용의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 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고려하여 방진 설비와 적정 바닥재를 계획한다.

- 벽체에는 가능한 거울을 설치한다.

- 공간활용을 위하여 세면장·샤워실은 계획하지 않는다.

- 로프 매듭훈련 등 실내 진압훈련 및 구급교육훈련, 외부 민원인 대상 교육을 위하여 체력단련장과 병행하여 다목적훈련장을 설치한다.

- 다목적훈련장 내(소방안전교실 병행 설치) 지진, 소화기, 옥내 소화전, 소방시설, 피난, CPR 등의 체험 및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유공간 확보

#### ● 전산실(정보시스템실)

- 사무실 인근에 설치한다.

- Access Floor 및 전원, 통신라인 포설을 위한 케이블 트레이를 시공하여야 하며, 각종 정보통신장비, 방송장비, 서버 혹은 컴퓨

터 등의 각종 기자재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시스템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적용한다.

- 청사 내·외부 CCTV 관제시스템 등의 작동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실의 외측에 면하는 창호에는 반드시 방범창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범 기능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누수 혹은 이와 유사한 습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계획한다.
- 실의 천장에는 상·하수배관이 통과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화재 발생 시 정보통신 장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화설비를 한다.
- 기간통신사업자의 광케이블 및 유선통신선로, 또는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에 따른 광케이블 인입을 위하여 통신관로를 향후 증설되는 용량을 감안 하여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통신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 현재 사용 중인 시스템과의 호환성·운영성을 고려하여 장비 선정 시 현 시스템과 동일 또는 동등 이상, 호환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실시설계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 내·외부 휴게실

- 긴급출동을 고려한 배치계획을 한다.
-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인테리어디자인을 통해 휴게실로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 휴게공간 일부에 책장 등 소규모 휴게설비를 둘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외부 휴게공간은 직원들의 휴식과 민원인 등 방문객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 주방 및 식당

- 식당은 2층에 설치하며, 당일 근무인원(14인)이 전체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식당에서 주방 내부가 보이도록 계획한다.
- 주방에는 식품 보관창고(일반, 냉동)를 포함하여 계획한다.
- 식당은 자연채광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도록 계획하고, 밝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한다.
- 주방과 식당의 공조 및 환기, 배기시설은 주방의 적정한 후드(천장형 또는 배기후드 등)를 설계하고 주방, 배식구, 식당의 에어 밸런스를 고려하여 음식냄새가 타 공간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특히, 주방의 배기를 통한 냄새나 유적(Oil Mist)이 외부공간으로 확산되지 않는 오일필터와 탈취 성능이 우수한 필터를 계획하여야 한다.
- 식당 내 시설물 및 각종 설비는 식품위생법 및 한국식품연구원의 “유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참고하여 계획한다.
- 주방의 바닥은 미끄럼 방지용 재료로 하며,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식당 내 음수대 설치 계획을 하여야 한다.

### ● 조리사 휴게실

- 조리사 휴게실은 바닥난방 형식으로 계획하며, 탈의실 및 화장실 등을 포함하여 주방과 인접하여 계획한다.

### ● 옥상훈련

- 기구육기 및 레펠훈련
  - 하강외벽은 중간에 창호 및 환기캡 등을 없도록 하여, 기구올리기 및 레펠 하강 시 장애가 없도록 하고, 외벽마감재는 신발자국 등 훈련자국이 남지 않는 색상 및 재료로 설계
- 수직·수평도하 훈련장
  - 옥상에 수직지지물(높이 2.5m) 10m 간격 설치
  - 수직지지물은 하중 300kg 이상을 견디도록 설계
  - 건물 옥상에 철탑형태로 훈련할 수 있는 구조물 설계

### 나. 토목 설계지침

### 1) 부지 정지 공사

- 가) 기존 지형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주변지역 연결 등을 고려하여 정지 계획을 수립한다.
- 나) 토량 발생을 최소화하되, 사업대지 내에서 절·성토 균형을 유지하도록 설계한다.
- 다) 토량의 운반거리가 최소화되도록 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 라) 절토 시 발생하는 양호한 표토는 잔디 및 수목 식재 시 활용방안을 강구한다.
- 마) 대지 계획고 및 진입로 계획고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계획고를 결정한다.
- 바) 법면 발생을 최소화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구조물 설치를 배제하도록 정지계획을 수립한다.
- 사) 양반 굴착면에 기초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요철은 ± 10cm이내로 정지하여야 하고, 그 이상이 되는 여굴부위는 빈배합 콘크리트 또는 Mass Con' c로 처리한다.
- 아) 굴착면의 이물질이나 부석(튼돌)은 모두 제거하여 기초와 양반과의 부착을 양호하게 하여야 한다.

### 2) 상수도 공사

- 가) 용수공급계획은 광주시 상수도기본계획에 의하되, 발주처와 협의 후 인입지점을 결정한다.
- 나) 용수량은 현재는 물론 미래와 주변지역 급수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3) 하수도 공사

- 가) 환경부제정 하수도시설기준 및 화성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되, 기존 배수시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우·오수량 추정과 배수 방식 및 유량계산을 실시하고, 우수는 지구 외 유역을 정확히 파악하여 배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유출부 단면이 부족함이 없는지 검토 및 반영한다.
- 나) 배수시설은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하고, 우·오수 교차부분은 오수관로가 우수 관로 보다 가급적 깊게 하고 동일경로로 계획하여 간선배수시설까지 분류식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 관거는 직선으로 부설하고 굴곡부는 예각 또는 직각 접합을 피하며 침하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라) 우수맨홀뚜껑은 차도는 주철재 뚜껑을 사용하고 보도 및 녹지에는 보도포장재와 조화되는 재질의 뚜껑으로 하고, 우수맨홀의 경우에는 밀폐된 주철재 뚜껑을 사용한다.

마) 우수받이는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뚜껑을 사용하여야 하며, 저부에는 하수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도록 invert를 설치한다.

바) 단일 굴착에 의한 우·오수관은 동시 시공이 가능토록 평면계획을 수립한다.

### 다. 기계설비 설계지침

#### 1) 기본지침

가) 시설별 요구조건에 충족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모든 자재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 절약형 자재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나) 건축, 전기 등 관련된 타 기술분야의 긴밀한 협조 하에 건축물의 각 구성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수,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고 장래에 증설,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적용성이 있어야 하며, 향후 증축 등에 대비하여 기계실을 확보한다.

라) 냉·난방, 위생, 환기 기타 모든 공급처리 시설은 최신의 시설 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소수인원으로 운전이 가능하도록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유지·관리비용을 최소화 한다.

마) 건축시설별 운영계획(사용시간, 사용요일 등)을 고려한 설비를 구성한다.

#### 2) 냉·난방설비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적용 안전하고 경제성을 고려한 지역난방, 도시가스 등 냉·난방시스템을 계획한다.

나) 쾌적한 환경의 지속적인 유지 및 공간활용이 되도록 방열기구를 선정한다.

다) 실내 공기질의 청정화 및 쾌적성이 보장되는 외기 환기 횟수 및 공기정화 계획을 수립한다.

- 라) 동파방지 및 결로방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마) 소음과 진동을 줄일 수 있는 설계를 한다.
  - 바) 좌식생활을 주로 하는 곳에는 온돌방 형태로 한다.(협의)
- 3) 위생설비(급·배수 설비)
- 가) 양질의 급수를 위하여 직결급수 방식을 채택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저수조 시설을 설치한다.
  - 나) 안전급수를 위하여 위생설비, 급수설비 자재를 내식성 자재로 사용한다.
  - 다) 수질오염, 적정급수압, 부지내의 상수도 공급조건 등을 검토하여 직결급수방식, 고가수조방식과 가압급수방식의 경제성 및 장단점을 비교 선정한다.
  - 라) 절수형 위생기구를 선정한다.
  - 마) 공용 화장실 남·여 변기수(대·소변기)는 공모지침서의 내용을 참조한다.
- 4) 환기설비
- 주방 및 정화조 환기는 제1종 환기방식에 의한 건물 최상층에 배기하도록 하고, 기타 실의 환기방식은 각 시설별로 합리적으로 채택, 자연환기를 동시에 감안하여 특성에 따라 적정방식을 선정한다.
- 5) 소방설비
- 소방관련법령 및 시행규칙,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법하게 설계한다.
- 6) 가스설비
- 가) 필요한 곳에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에 적합하게 채택한다.
  - 나) 자동가스차단 경보기 설치를 계획한다.
- 7) 기타사항
- 가) 출입이 빈번한 기계실 천정, 배관 피트 등은 점검 및 유지보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 나) 지하 매설관을 공동구에 설치하지 않을 경우 침하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한다.
  - 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이 용이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 라. 전기설비 설계지침

### 1) 수변전설비

- 가) 전력수급 지점은 사전에 현장을 충분히 조사·확인 후 해당기관인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나) 피뢰설비와 접지설비는 관련법규 및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 다) 한전수탁공사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 전 검사 수수료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
- 라) 상용 전원이 정전되었을 경우 비상용 축전지설비가 가동되어 화재출동방송 및 화재출동에 관련된 시설은 중간 전원으로서 적절한 용량의 축전지를 설치한다.

### 2) 전력간선설비

- 가) 각층에 분전반을 설치하고 분전반은 부하의 중심점에 설치한다.
- 나) 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인 강도, 단락시 허용 전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 간선설비는 안정성, 효율성 및 장래 부하설비 증설을 고려하여 간선의 구성 및 용량을 결정하되, 관리자주체 실별 분리를 위하여 간선분리를 구성한다.
- 라) 배전전압은 3상4선식 380V/220V로 계획하고 간선의 길이는 가급적 최단거리가 되도록 하며, 분기회로의 부분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3) 동력설비

- 가) 동력제어반과 각 기기의 평면배치 및 조화성을 고려한다.
- 나) 진동하는 기기의 배관에는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 다) 동력배관과 설비배관의 증기 및 고열에 대한 배관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 라) 제어반, 배전반, 전동기 등의 접지선 굵기는 충분토록 고려한다.
- 마) 공기호흡기 충전기 장비등의 사용 전원방식 및 용량을 사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4) 전등설비

- 가) 건축물의 각 실별 용도에 적합한 광원과 등기구 종류와 각 실에 맞고, 눈의 피로 및 보호를 위한 적정조도 (KSA3011)로 설계한다.
- 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LED등 반영구적인 제품 등)를 사용한다.

- 다) 전등은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등기구수 6개 이내의 전등군으로 구분하여 전등군마다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되,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창과 가장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한다.
- 라) 매입 조명기구의 설치 위치에 타 설비 또는 덕트배관 등 장애물을 감안하여 건축층고높이 설계 시 천정부분의 충분한 설치공간을 협의하여 확보 반영한다.
- 마) 가급적 조명기구 종류수를 단순화하여 준공 후 유지보수비 절감 및 자재확보의 편의성을 고려한다.
- 바) 야간의 차고앞에서 소방차량정비등 작업을 할수 있는 조명을 반영하여야 한다
- 사) 옥외 보안등은 조경과 건축물 주변 여건 등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5) 전열설비

- 가) 전열 1회로당 최대 수구수는 10개 이하로 설계하고 실별, 용도별로 구분한다.
- 나) 일반용 수구는 220V 접지형을 사용한다.
- 다) 수구부하의 용량은 150VA/EA로 하며 분기회로는 용량의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라) 수구의 사용전압이 다를 경우 사용자가 쉽게 구분 및 사용이 가능하게 분류한다.

#### 6) 접지설비

- 가) 고감도 장비의 보호를 위하여 등전위 접지로 설계한다.
- 나) 건축물 용도에 적합한 접지구성 설비로 설계한다.

#### 마. 정보통신 설계지침

##### 1) 전화 및 교환설비, 인터폰설비

- 가) 구내통신선로설비 또는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를 구성하는 배관 시설은 설치된 후 배관의 교체나 증설 시공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한다.
- 나) 구내통신선로설비 또는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는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이 용이하게 한다.
- 다)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종합유선방송 구내전

송선로 설비 등은 초고속정보통신망 및 종합유선방송망을 접속하기 위한 통신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설치 방법은 정보통신부장관의 고시를 따른다.

- 라) 구내통신선로설비에는 구내로 인입되는 국선의 수용, 구내 회선의 구성 및 단말장치 등의 증설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회선을 확보한다.
- 마) 예비회선수를 20%이상 확보할 것. 다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배관시설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바) 사무자동화 추세에 따른 각종 사무기기 설치를 고려하여 소요 회선 수 및 제반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 2) 방송설비 (세부 설치위치 협의)

- 가) 일반방송(안내방송, BGM) 및 비상 시 화재수신반과 연동하여 비상방송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나) 실별, 용도별 그룹구성 검토와 전관방송의 일반 방송기능과 비상 발생시 방송연계 기능이 가능하게 한다.
- 다) 스피커의 수량과 Amp의 용량은 충분하고 스피커의 배치를 적절하게 한다.
- 라) 비상방송을 겸한 방송설비의 스피커 배선은 HIV 1.6mm이상의 전선을 사용한다.
- 마) 방송용 스피커는 반사음 및 반경을 구획하여 충분한 음량으로 한다.
- 바) 청사내 방송스피커 및 재난지휘센터 방송스피커 실별(구역별) 각각 설치하며 청사방송 설비는 음량이 조절 가능하게 설치

##### 3) 기타 설비

- 가) 낙뢰로부터 건물 인원 및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피뢰설비를 고려한다.
- 나) 모든 시설은 장래 확장(초기, 중기, 최종)에 대응 할 수 있도록 각종 설비용량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 다) 주차관제, 침입감지, CCTV, 출입통제 설비를 검토 반영한다.
- 라) 청사 옥외 조명 전선배관은 바닥으로 설치하되 노출형태 지양한다.

#### 바. 조경 설계지침

- 1) 토지이용 및 동선체계, 조경공간과 건물의 유기적 배치, 위치에 맞는 수목선정 및 식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다.
- 2) 수목식재는 식재지역의 기후, 토양 등을 비롯한 제반 생육환경 여건에 부합 되도록 식재한다.
- 3) 식물재료는 현장주변의 자생종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경관적·생태적 동질성을 확보하고 환경적응력을 양주도록 할 것이며, 배식계획 수립 또한 교목, 관목, 지피종 등 다층식생구조를 유지토록 한다.
- 4) 기타 시설 및 특기사항(유지관리지침 등)을 준수 한다.

사. 에너지절약 설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관련한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 2)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 기술도입 지원조례 인정설계

인증	설계기준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4등급 이상
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 이상
신재생에너지	공급율 34%이상

- 3) 녹색소방 실천을 위해 청사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가) 건물 외벽면적에 대한 창면적비 50% 미만
  - 나) 옥상 녹색 휴식공간 조성(바닥면적 30% 이상)
  - 다) 절수형 수도설비 설치
  - 라)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오염수 우수관 유입 방지)
  - 마) 자전거 보관소 설치 검토
  - 바)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등(바닥재, 벽지, 페인트 등)

**제 4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설계용역 성과품을 기술용역공정예정표의 제출일 이전에 발

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한다.

나. 수급인은 조달청 시설분야 “건축설계내역서 작성안내” 기준으로 작성하여 향후 조달청(발주처)에 공사원가검토, 시설공사 발주의뢰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달청 기준에 부합하게 한다.

**2. 유의사항**

- 가. 관급자재내역서(수량, 금액)는 도급 예정자가 설치할 관급자재와 구분 제출
- 나.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상의 품명, 규격 등을 일치시킬 것
- 다. 전문 업체 견적가격 적용한 품목은 견적서 첨부
- 라. 관련 법령에 의한 분리 발주 부분 성과서 구분 제출
  - 1) 통신공사부분
  - 2) 전기공사 부분
  - 3) 기타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3. 성과품 작성**

- 가. 설계설명서
  - 1) 공통분야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공종별 주요 시공 및 공정, 총공사비 산출 및 산출근거 등을 설명한다.
  - 2) 건축분야
 

기본계획, 환경 및 대지조건, 지질지형 및 하부구조, 배치계획, 예상 공법 타당성 검토, 법규 검토, 주요 사용재료 결정, 평면·주요 단면선정, 구조·부대시설 등 기본 방식 결정, 공정계획 및 세부공사비 등
  - 3) 설비분야
 

주요설비, 냉·온열원, 도시가스, 환기, 소화설비, 공조덕트, 자동 제어, 위생 등 기타설비, 에너지 절감·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세부시공 및 공정계획, 세부 공사비 등
  - 4) 전기·통신분야
 

수변전, 비상발전, UPS, 전등전열, 옥외외등설비, 전력간선, 전화교환, 구내통신, 전기 및 전화설비, 에너지 절감·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세부 공정계획 및 공사비, 유지관리 시설 등



5) 토목 및 조경분야

부지 정지계획,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 조경시설, 배수처리 시설, 상수도 공급 시설 공정계획 및 세부공사비 등

6) 인테리어분야

기본계획, 실내마감, 가구배치계획, 주요 사용재료 결정, 천정평면·주요 단면선정, 색채 계획, 공정계획 및 세부공사비 등

나. 각종 계산서

구조계산서, 전력부하 계산서, 조도 계산서, 냉난방 부하계산서, 기계설비용량계산서, 에너지절약계산서, 정화조 등 용량계산서를 포함하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구조계산서

가) 구조계산서는 계산내용이 알기 쉬우며 정확하고 상세하게 정리되어 검토가 용이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특히 프로그램의 입·출력 자료는 모든 CASE별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구조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계산에 사용된 프로그램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 또는 부재 등을 정리하여 수록한다.

다)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별책 작성한다.

라) 출력자료가 구조계산서의 형태 및 순서로 정리되어 인쇄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본 구조계산서의 해당항목에 수록한다.

마) 구조계산서의 각 페이지 우측 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 확인자란을 만들어 계산의 적정여부를 확인 후 서명한다.

바) 구조계산 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 반드시 가정 값을 표시한다.

2) 설비분야 설계계산서

주요 장비·설비의 용량계산서 및 선정서, 부하계산서, 화재수신반회로계산서

3) 전기·통신분야 설계계산서

단락전류·변압기용량·비상발전기용량·배터리 및 충전기용량·전압강화·전회회선산정·방송용 앰프용량 등의 계산서, 부하계산서, 조도계산서 등

다. 설계도면

1) 일반사항

가)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나)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다)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바) 설계도면에는 관련도면 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사) 모든 도면은 정부에서 제정, 보급하게 되는 건설CALS/EC 전자도면작성표준(안)에 준하여 CAD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CD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라. 유지관리지침

유지관리지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1) 시설개요 :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기타
- 2) 구조계획도 : 구조일반도, 주요단면도
- 3) 구조의 특성 : 구조의 역학적 특성, 주요구조부재의 특징
- 4) 주요 점검내용 :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 5) 보수방법 : 건축마감,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 보수방법

마.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나)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

### 기준의 명칭

- 다)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 라)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 마)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 바) 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 사) 발주기관과 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 아)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 자)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 차)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 카)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 타) 건물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
    - 파) 기타 주요공사 사항(인테리어 시방서 등)
- 3)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가)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 나)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 다)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가급적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라) 공법 및 공중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 마) 공중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 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 사)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작성한다.
      - 아)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계약대상자,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 자) 독과점 품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 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바. 공사내역서

- 1) 공사내역서의 작성은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참조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2) 공사비 내역서는 재정경제원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및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을 적용한다.

### 가) 재료비

-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지 게재가격/적용기준일 명시)으로 한다.
- (2) 조달정보지에 미 수록된 자재는 기획경제부에 등록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가격(견적서첨부)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한다.
- (3) 상기에서 조사·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0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현장조사를 실시,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나) 직접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공표한 가장최근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한다.(적용기준일 명시)

- (1) 예정 공사비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한다.
- (2) 공사비에는 지장물이설비, 한전인입비, 상수도인입비, 하수도원 인자부담금, 도시가스인입비, 시운전비(기계·전기), 폐기물처리비 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 (3)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 근거를 기록한다.
- (4)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자료를 인용할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 (7)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 관련기준 및 외국사례를 참조 작성하여야 한다.
- (8)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9) 운반비는 운반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산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 (10)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표로 작성하여야 한다.
- (11) 설계도서 및 내역서 등은 조달청 계약발주가 가능하도록 작성(분리)하여 제출한다.

사. 예정공정표 작성

- 1) 예정공정표 작성에서 1개의 Activity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하로 하고 1개의 Activity의 공사비는 전체의 20% 이하로 하여 실제적인 공정검토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2) 예정공정표는 CPM/Net Work 기법으로 설계원도 및 청사진에 작성하고, A3 규격으로 축소하여 제출한다.

아. 지장물조서 및 인·허가 도서 작성

- 1) 지장물조서 작성 : 지장물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 조사한다.
- 2) 관계법규 인·허가 도서 작성 :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신청용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자. 설계과업 중점 사항

- 1) **실시설계 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사전검토 후 도면 및 내역서 반영 등**
- 2)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관련 관련부서 협의의견 필히 반영**
- 3) 기초공법(지정공사를 포함)은 지반조사 보고서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설계를 진행한다.
- 4) 피트층 트렌지·집수정 및 1층 벽면하부 방수처리
- 5) **아스콘포장 관련 소방차량 중량으로 침하 방지를 위한 설계**  
(빗물의 투수를 위하여 투수아스콘 반영하나 침방 설계 및 공법)
- 6) 공공청사로 내진설계 의무 대상으로 건물외부 치장물 및 건물구조 **내진성능설계**
- 7) 신기술 및 특허 공법 지양
- 8) 소방수요 증가에 따른 증축 및 공간확보가 필요한 건축물 설계, 특히 청사 옥내외 누수와 관련 **청사유지관리에 효율적인 설계**
- 9) 통신장비·방송장비 관련 본부중합상황실 연계에 필요한 선로 및 회로 설계  
(무정전 전원장치 및 KT 장비 본부중합상황실 발주)

4. 성과품의 납품

가. 기본설계(기계, 소방, 전기, 통신설비 포함)

구 분	내 용	수 량
기본도서 (기계, 소방, 전기 통신설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설명서</li> <li>○ 배치도, 주차계획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종·횡), 상세도</li> <li>○ 구조계획서</li> <li>○ 현황도 (기존 부지, 도시계획 포함)</li> <li>○ 재료 마감표</li> <li>○ 설비계획도 (기계, 소방, 전기, 통신설비 등)</li> <li>○ 포장계획도</li> <li>○ 우·오수 배수처리계획도</li> <li>○ 상하수계통도</li> <li>○ 조경배치도</li> <li>○ 지질조사 보고서</li> <li>○ 시설도(호스건조대, 차고문 등)</li> <li>○ 법규검토서</li> </ul>	5부 (합본)

나. 실시설계(기계, 소방, 전기, 통신설비 포함)

구 분	내 용	수량
설계도서 - 설계개요, 배치도, 주차계획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창호도, 상세도, 마감도, 부하계산서, 장비일람표, 계통도, 인입도, 포장계획도, 우수배수처리계획도, 상하수계통도, 조경배치도 등	- 설계원도 A1 - A3 온책(반접) - 세부공정표 (PERT/CPM)	2 부 5 부 5 부
구조도서	- 설명서, 구조도면, 구조계산서, 상세도 등	각 5 부
공사시방서	- 특기 및 공통시방서	5 부
공사비 내역서	-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서 - 수량산출서	5 부
	- 공사비총괄내역서 (건축,기계설비,토목,조경,전기,통신,소방,부대공사)	5 부
심의 및 협의도서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 건축, 전기·통신·가스·상하수도 등	- 심의 및 협의도서	필요 부수
투시도 또는 조감도	- 투시도(조감도) 중판	1 점
	- 투시도(조감도) 소판	2 점
CD (혹은 이동저장장치USB)	- CD : 전산화(AUTO CAD) 도면, 시방서, 공사내역, 일위대가, 단가산출, 수량산출서 등	3 점
현장설명서	- 건축(기계설비)·전기·통신 등으로 구분	5 부

※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추가적 규격의 성과품에 대해 수급인은 성실히 납품하여야 한다.

# 별지양식

## 보안각서

1. 용역명 : 광주소방서 송정119안전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2. 계약일자 : 2024 . . . . .
3. 착수일자 : 2024 . . . . .
4. 완수예정일 : 2024 . .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그 밖의 입찰유의사항) 3.(비밀유지의무)를 준용하여 용역수행 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처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의 제10절의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에 의거 발주처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4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술분야 : 참여공종 표기  
성 명 : (인)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무관 귀하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역명 : 광주소방서 송정119안전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2. 계약금액 : 원(금 원)
3. 계약일자 : 2024 . . .
4. 착수일자 : 2024 . . .
5. 완수예정일 : 2024 . . .

- 아 래 -

- 가. 성명 :
- 나. 주소 :
- 다. 주민등록번호 :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4 . . .

계약자 :  
주소 :  
상호 :  
대표자 : (인)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무관 귀하

하도급승인 요청서

1. 용역명 : 광주소방서 송정119안전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2. 계약금액 : 원(금 원)
3. 계약일자 : 2024 . . .
4. 착수일자 : 2024 . . .
5. 완수예정일 : 2024 . . .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측량, 지질조사 등)
- 나. 하도급금액 :
- 다. 하도급자
  - 주소 :
  - 상호 :
  - 대표자 :
  - 보유면허 :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끝.

상기인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하고자 하오며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의거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 . .

계약자  
주소 :  
상호 :  
대표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무관 귀하

(기본, 실시)설계 검사원

1. 용역명 : 광주소방서 송정119안전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2. 계약금액 :       원(금 원)
3. 계약일자 : 2024 . . .
4. 착수일자 : 2024 . . .
5. 완수예정일 : 2024 . . .

붙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기본,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 . .

계약자  
주소 :  
상호 :  
대표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무관 귀하

### 주간공정보고

- 용역명 : 광주소방서 송정119안전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24 년 월 일 ~ 2024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금 원)
- 용역진행사항(예시)

구분	전주진행사항(2024 . . .)	금주예정사항(2024 . . .)	비고(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체험전시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소 :  
상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인)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무관 귀하

### 월간공정보고

- 용역명 : 광주소방서 송정119안전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24 년 월 일 ~ 2024 년 월 일

◦계약금액 : 원(금 원)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4 . . . ~ 2024 .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 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무관 귀하